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건의서

수신: 군산시장 및 군산시의회 의장
참조: 수도과장, 소관 상임위원회
제목: 공동계량기 사용 임차인의 수도요금 연대납부책임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건의

1. 건의 취지

현행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는 수도사용자 등의 수도요금 연대납부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수도계량기를 여러 임차인이 공동 사용하는 건물에서는 수도계약자인 소유자가 장기간 요금을 체납하더라도 개별 임차인이 이를 사전에 확인하거나 자신의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만을 독립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전체 체납액에 대한 연대납부책임을 적용하는 것은 책임의 범위와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합리적인 사용분의 납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소유자의 체납으로 단수 위험까지 부담하는 것은 임차인의 재산권과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현행 조례의 개선을 건의합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가. 책임과 권한의 불균형
공동계량기 건물의 임차인은 수도계약과 요금 정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반면, 소유자의 체납에 따른 연대납부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나. 책임 범위의 불명확성
임차인의 실제 사용량과 사용기간을 구분하지 않은 채 전체 체납액에 대한 책임을 적용할 경우, 다른 사용자의 사용분까지 부담하게 되는 불합

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체납 예방 장치의 부족
수도계약자가 장기간 체납하더라도 임차인이 이를 적시에 확인하거나 독립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 단수로 인한 제3자의 피해
노인복지시설 등 다수의 이용자가 있는 시설에서는 단수로 인해 체납 책임과 무관한 이용자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조례 개정 건의사항

제1안. 연대납부책임의 범위 명확화
현행 제22조 제2항의 연대납부책임 규정을 다음과 같은 취지로 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개정 제안 문구
"수도사용자 등의 수도요금 납부책임은 실제 사용관계, 사용기간, 급수시설의 관리권한 및 체납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동계량기를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연대납부책임을 적용하는 경우 그 책임 범위와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제2안. 공동계량기 임차인의 별도 납부제도 신설
신설 제안 문구
"시장은 공동계량기를 사용하는 임차인이 합리적으로 산정된 자기 사용분의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별도 납부 또는 예치 등의 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부 납부의 법적 효과와 잔여 체납액에 대한 책임 범위를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3안. 체납 사실의 사전 통지제도
신설 제안 문구
"시장은 공동계량기 사용 건물에서 수도요금 체납이 장기화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및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해당 건물의 임차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체납 사실과 단수 가능성을 사전에 안내할 수 있다."

제4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수처분 보호절차 강화

현행 제36조의 정수처분 규정에 다음 사항을 추가할 것을 건의합니다.

개정 제안 문구

"시장은 정수처분으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이용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이용자 보호대책, 대체 급수 가능성 및 정수처분 유예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4. 법률적 검토 요청

위 개정사항에 관하여「수도법」등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 헌법상 평등원칙과 비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동계량기 사용 임차인에게 실제 사용관계와 무관하게 전체 체납액에 대한 연대납부책임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검토를 요청합니다.

5. 결론

수도요금의 안정적인 징수는 중요한 공익적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도 수도계약자와 임차인 사이의 권한 및 책임의 차이, 임차인의 현실적인 납부 가능성, 제3자의 피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에 군산시와 군산시의회가 현행 연대납부책임 규정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공동계량기 사용 임차인을 위한 합리적인 보호제도를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본 건의는 현행 조례의 개선을 요청하는 입법 의견으로서, 특정 체납액에 대한 채무승인이나 분할 납부 약정의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2026년 11월 23일

건의인: 김영윤

주소: 군산시 은파로 66 (미룡동, 제이아트은파더레이크 101동 802호)

연락처: